

제천시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 안

의안 번호	144
----------	-----

제출년월일 : 2008. 3. .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사유

- 장래의 폐기물처리를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조성한 자원관리센터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일부 시설을 위탁운영코자 의안으로 제출함.

2. 위탁 필요성

- 본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은 복합적인 플랜트 설비로서 시설을 안전이 강조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저감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설로 상당기간의 운영 경험이 필요하며
- 본 시설을 운전요원은 기술교육 등 일정 기간의 학습이 필요한 시설로 공무원 조직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의 위탁이 필요함.

3. 위탁개요

- 위치 : 제천시 신동 625번지(자원관리센터 내)
- 위탁운영대상 시설

시설명	시설용량	위탁운영조건				비고
		위탁방식	운영관리비	운영비지원	위탁기간	
소각시설	50톤/일	의무위탁	수탁자부담	지원	1년	
음식물사료화시설	20톤/일	의무위탁	수탁자부담	지원	1년	
재활용품선별시설	30톤/일	시공사 위탁	수탁자부담	지원	3년	
유리온실	820㎡	임대	수탁자부담	없음	3년	

4. 수탁자선정 기준

-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음식물사료화, 재활용품선별시설)
 - 입찰안내서에 의한 시공사 의무위탁
 - 전문기술, 시설설계에 대한 이해도, 비상사태의 대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운영능력이 검증된 당해 시설을 시공업체 또는 제작업체
- 조경시설(유리온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
 - 시설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관내거주자로 제한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44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
-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 제7조

6. 참고자료

- 관계법령 사본
- 사업추진현황

관 계 법령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4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당해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충당, 이용료의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 등) ③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5.3.8>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재산관리법 제27조 제1항

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과 위탁 대상사무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사 업 추 진 현 황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 제천시 신동(동막골) 62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4. 1. ~ 2008. 6.
- 부지면적 : 772,513㎡(분시설 187,832, 녹지대 584,681)
- 사업비 : 46,779백만원(국비14,197, 도비468, 시비32,114)
- 시공사 : GS건설(주)와 3개사
- 감리단 :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주)한건기술단

□ 자원관리센터 주요시설물

시설명	규모	사업비 (백만원)	적용공법	비고
계		46,779		
매립시설	29,380㎡	27,941	매립량 : 259천㎡	
재활용품선별시설	30톤/일	1,500		
소각시설	50톤/일	14,998	스토카식	
음식물사료화시설	20톤/일	2,340	건식사료화식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2면, 유리온실800㎡, 눈썰매장 1면, 공원4개소			

2. 추진현황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총 공정 95%(2월 말 현재)
- 정상가동 시설 :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 07.11월 가동개시
- 시운전인 시설 : 소각시설, 음식물사료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 4월 정상가동
- 시공중인 시설 : 주민편익시설(동절기 공사중지)

제천시자원관리센터 부분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안)

제천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 대표이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제천시 신동 625번지 일원에 위치한 제천시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및 음식물자원화시설(이하 “위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업무를 위·수탁하기로 계약하고 용역도급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입찰안내서 제1편 공사개요 11의 16호 유지관리 위탁운영(의무위탁)의 규정에 의거 “위탁시설물”의 전문 기술이 확보된 시공업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설비효율의 안정화와 안전한 쓰레기 처리 및 대기오염방지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용”이란 위탁시설물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고정비용, 변동비용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고정비용”이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되는 비용으로 하고 협약에 의하여 정산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3. “변동비용”이란 고정비용을 제외한 위탁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시설보완 및 개선비, 전력비, 연료비, 상·하수도요금, 약품비, 측정 및 경사수수료, 재처리비, 기타 운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등과 “갑”的 요구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지급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탁운영에 대한 재산의 표시) ① 위탁관리 운영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을”은 시설의 재산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및 증감내역을 포함한 세부적인 목록을 별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명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내 소각시설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2.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625번지 일원
 3. 시설용량 : 소각시설 50톤/일, 음식물자원화시설 20톤/일
 4. 방식 및 기타 시설 및 기구 : 별도 인계·인수사항과 같음(준공 인계·인수서)
- ② “을”은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을 이유로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시설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세부내용은 “갑”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위탁시설물”에 반입된 쓰레기의 관리 및 처리, 성상분석
2. “위탁시설물”的 운영 및 유지보수
3. 생산품 및 잔재물(오·폐수포함)의 배출과 상차·운반·보관·처리, 주변 정리
4. “위탁시설물”的 부대시설 등 일체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관리
6. “위탁시설물”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관리
7. “위탁시설물”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위탁자가 필요한 자료제출 등
8. 배출가스의 자가 측정, 각종 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유지
9.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및 개선대책, 주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0. “위탁시설물”的 소방시설관리 및 안전점검
11. 유류탱크 및 화학약품탱크 관리
12. “위탁시설물”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대책
13. “위탁시설물” 견학 안내 및 홍보
14. 수·변전실 관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15. 기타 “위탁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기간) ① 의무위탁 운영기간은 2008. . . ~2009. . . 로 한다.

단, 의무위탁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제22조“협약의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설물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的 합의에 의한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는 의무위탁 운영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을”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수탁기간 연장에 따른 위탁비용은 제8조 “위탁운영비용”的 규정을 적용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위탁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재산관리와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운영비용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다
- ③ “을”은 “위탁시설물”的 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 양도·대여·교환 및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을”은 위탁관리·운영기간 중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환경관련법령의 기준치 초과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행정적 책임을 진다.

- ⑤ “을”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 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사무편람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을”은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 및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탁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⑦ “을”은 “갑”이 요구하는 “위탁시설물” 운영관련 상황보고 또는 직접 확인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⑧ “을”은 홍보 및 직원교육훈련계획 등에 관하여 “갑”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을”은 시설물 주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민원처리에 공동대처 협조한다.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을”은 “위탁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 운영계획서와 변동비에 대한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제출하여 “갑”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계약 첫해의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회계연도 중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갑”에게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비용) ① 위탁운영비용은 고정비용(비정산비)과 변동비용(정산비)으로 구분하되, 변동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을”이 공사 또는 물품매입의 절차에 따라 지출하고 매 월 “갑”이 정산 지급하며, 고정비용은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계약하여 매 월 균등 지급한다.

- ② 고정비용 및 변동비용은 제2조 “용어의정의”에 명시된 각 항목별 모든 비용으로 하며 각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③ 의무위탁기간 중 고정비용은 년 원으로 한다. 위탁기간의 연장에 따른 비용은 제4항을 준용하여 별도 계약한다.
- ④ 기간 연장에 따른 위탁운영비용은 전문기관의 원가분석자료와 “갑”과 “을”的 합의에 의하여 계약하며 연장계약 차년도 이후의 고정비용은 당초 계약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물가변동률을

조정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물가변동률 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을 적용하여, 기타 위탁시설물의 규모변경 또는 운영기술 개발실적 등으로 인하여 운영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단, 의무 위탁기간 중에 한하여 물가변동률에 의한 계약비용 증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변동비용 중 일상적인 비용인 재처리비, 각종 측정·검사비, 배기가스 처리 및 음식물사료화에 필요한 각종 약품비 및 소모재료 등은 “갑”에게 단가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을”이 집행하며, 변경될 경우에도 “갑”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력비, 상·하수도비, 연료비용 등은 “갑”이 일괄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⑥ “을”은 변동비의 단일사업 중 예정가격이 일천만원(₩10,000,000)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용역, 교체, 개선공사의 경우, 별도 “갑”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한다. 다만, 긴급 상황으로 인한 수리 및 자재구입은 지출 후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을”은 변동비용의 절감을 위해 운영기술개발이나 기타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력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예산을 절감한 것이 인정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절감액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차년도 고정비용의 이윤율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위탁시설물”的 운영실적(소각 및 음식물사료화)은 설계용량의 90% 이상을 하는 것으로 하되, 월평균 90% 이상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위탁료를 감한다. 단, 정기보수기간 및 하절기(7,8,9월)와 “갑”的 사유로 책임처리량을 반입하지 못할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라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처리량은 반입량을 기준으로 한다.

⑨ 월평균 책임처리량의 부족에 의한 위탁료 공제는 고정비 지급분에서 일괄 정산하여 감한다. 위탁료를 공제하는 기준은 연간 지불된 고정비 중에서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거 감하여 매월 일괄 정산하여 삭감 지불 한다.

$$\text{공제금액} = (\text{이윤} + \text{일반관리비}) \times \text{미처리량}(\text{미소각량} + \text{미처리음식물쓰레기}) \div \\ \text{책임처리량}(소각 45톤/일 + 음식물18톤/일)$$

⑩ “위탁시설물”的 운영실적이 설계기준인 300일 초과 운영하여 생활폐기물의 매립량 절감 등 처리효율을 향상시켰을 경우 다음의 계산에 의거 초과운영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 처리비율은 100%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운영기간 중 평균 처리량이 설계용량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text{초과운영비} = ((\text{고정비용}) \div 300\text{일}) \times \text{초과운영일수} \times \text{처리비율}$$

$$* \text{처리비율}(\%) : (\text{처리량} \div \text{설계용량}(소각 50톤/일 + 음식물20톤/일)) \times 100$$

제9조(위탁비용의 지급방법) ① “을”은 기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운영비용의 집행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기별 소요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분기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매월 변동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산서와 함께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 “갑”은 익월 20일까지 고정비를 포함하여 “을”에게 운영비용을 지급하고 과부족액에 대하여 그 다음 달 변동비용 지급 시 가감 한다.

③ 천재지변 등 “을”的 귀책사유 없이 “위탁시설물”的 운전이 정지되거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고정비용의 위탁금액을 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을”的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을”이 책임진다.

④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제세공과금이 변동된 경우
2. 관련법규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변동의 사유로 상호 협의한 경우
4.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무시간이 단축될 경우(현재 기준 주 40시간)

제10조(위탁운영비용 사용관리) ① “을”은 위탁운영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본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동비용 관리 통장을 별도로 운영하여 분기별로 이자발생분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약품 및 각종 부속품 등은 유해가스 저감 및 시설수명 유지를 위해 정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물품구매는 공개입찰 또는 조달가격을 참고한 연간 단가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단, 공개구매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장조사 가격에 의해 구매하여야 한다.

제11조(인원 및 조직) ① “위탁시설물” 운영 시 “을”은 관련법규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은 00명으로 하고 조직은 “갑”과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인원 및 조직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을”이 고용한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 제12조(위탁관리운영) ① “을”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수탁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탁시설물” 중 소각시설은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음식물사료화 시설은 일평균 8시간 이상 가동하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을”은 쓰레기 반입 시 성상을 철저히 확인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시설물”의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반입량 과다 및 재고가 많을 경우 “갑”과 협의하여 통제 할 수 있으며, 반입장의 고철 및 처리가 곤란한 쓰레기 분리는 “을”이 수행 하며, 분리된 폐기물은 “갑”이 처리한다.
- ④ “갑”은 “위탁시설물”에 부적합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할 권한을 “을”에게 부여하며, “을”은 “갑”과 협의하여 부적합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을”은 “위탁시설물”的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설비 및 처리능력 등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 “을”的 통보내용을 검토한 후 “을”的 실수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갑”이 정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을”은 “위탁시설물”的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법정 정기교육은 물론 자체교육을 실시 직원들의 기술능력 배양에 앞장서야 한다.
- ⑦ “을”은 시설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설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전염병 등 질병예방과 근무자 보건위생 향상에 전념하여야 한다.
- ⑧ “을”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신기술 또는 설비효율 향상에 대한 자료 등이 있으면 “갑”에게 즉시 통지하여 향후 개선보완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위탁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자료를 “갑”이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⑨ “을”은 위탁운영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기준치를 초과 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및 행정적인 책임을 포함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원인 규명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⑩ 연소가스 배출기준치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하며 당초 설계상의 보증치(다이옥신 0.05나노그램 이하 등)를 초과하여 운영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초과원인을 파악하여 시설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설계상의 보증치를 초과하여 발생되는 정비 및 개선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⑪ 다이옥신 측정주기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연간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비용은 제8조 위·수탁 운영비용에 포함한다.
- ⑫ “을”은 위탁운영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운영기간 종료 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이 연장될 경우 매회계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⑬ 시설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 제품을 사용하여 유해물질 저감 및 수명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⑭ “위탁시설물” 업무의 TMS 등 폐기물 유해물질 및 방지시설 운영 중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및 각종 법정사무(교육, 검사)의 업무태만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과태료 및 법적·행정적 책임은 “을”이 진다.

제13조(설비의 점검 및 보수기간) ① 설비의 점검 및 보수기간은 분기별 점검보수와 정기점검 보수로 구분하여 “을”은 세부일정표를 작성 설비의 점검 30일전 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정비·점검 결과를 매일, 매월, 연간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점검보수와 정기점검 보수를 포함하여 연45일 이내로 한다. 단 정기점검 보수는 분기별 점검보수를 포함한다.
- ③ 점검보수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고정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단, 현재지변과 운영계획에 의한 정기보수·대수선 등과 같은 “을”的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인한 운전정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4조(기술전수) ① “갑”은 “위탁시설물”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기술전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협약기간 만료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협약 해지 후 “갑”이 “위탁시설물”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을”的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갑”이 특채할 수 있다.

제15조(예비품의 확보) “을”은 “위탁시설물”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계부품의 사양이 복잡하거나 제작기간 또는 구매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 사전에 예비품을 확보하여 자원관리센터 시설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6조(자산투자 및 취득재산의 귀속) ① 위탁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 등 고정 및 유동자산의 투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보수는 “을”的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 사무기기, 주요시설 보수용 기구 비품 등 유동자산의 투자는 “갑”的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이 “위탁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갑”에게 귀속되며, 귀속절차는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방법에 의한다.

제17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을”은 “갑”的 승인 없이 “위탁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목적외의 원상을 변형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으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선조치하고 그 내용을 자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갑”的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보험계약) ① “갑”的 위탁재산에 대하여 “을”은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한 시설물 설치금액 이상의 손해보험을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손해보험과 제3자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는 제8조 위탁운영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재산관리 및 사고책임)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이행한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는 “갑”이 부담한다. 단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보수는 제외한다.

② “을”的 과실로 인해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손해비용에 한해 책임을 지며, 사고내용을 다음 각 호에 의거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1. 재산의 표시

2. 손해 발생원인

3. 손해 추정금액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위탁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민원은 “갑”的 책임으로 하되, 관리운영상 과실에 의한 민원사항은 “을”的 책임으로 한다.

제20조(관리감독) ① “갑”은 “을”에게 “위탁시설물”的 전반적인 책임운영을 맡기고 이의 이해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② “갑”은 위탁관리 사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운영에 대한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을”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위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을”的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수익금의 귀속) “위탁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수익금 발생시 “을”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천시 세외수입 관리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 또는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갑”이 관리 및 운영방식을 변경한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 진술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갑”과 “을”이 협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3개월 이전에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이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 “을”은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⑤ 협약의 해지 또는 종료된 때에는 “을”은 협약체결 당시의 인계·인수서와 재산 목록을 기준으로 한 증감재산 목록과 함께 정상적인 운전과 유지보수 상태로 “위탁시설물”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해지예정일 이후에도 차기 수탁자가 인수할 때까지 협약의 효력은 계속되며, “을”은 차기 수탁자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인계·인수에 따른 기술지원 및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 종료일로 이후 소요되는 운영비용은 “갑”이 “을”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23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을”은 “위탁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면서 “을”的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 하였을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을”的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위탁시설물”을 수탁운영하면서 “을”的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영수의 의무) “을”은 당해 협약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기밀사항을 협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5조(상호 의견 조율) ① 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되어 “갑”과 “을”的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책임소재를 가린다.

③ 이 협약에 명문이 없거나 각 조문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행정선례 등에 따라 “갑”이 결정한다.

제26조(지역주민고용) “을”은 인력자체 직제 운영계획에 따라 적정 운영하되, 지역시설임을 감안하여 직종별 자격요건을 갖춘 운영요원 및 운영보조요원은 연고지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시설물” 관리현황을 매월 5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별 쓰레기 처리현황(시설별 처리재 반출 현황 및 가능일수 포함)
2. 폐열공급·보조연료 사용현황
3. 약품사용 현황(구매량 포함)
4. 시설물 건학 현황
5. 유지·정비·보수현황(일별, 월별)

6. 시험분석현황(성적서 사본 포함)

7. 일자별 전력사용량

8. 가동증지 및 교육수료 현황

9. 기타 “갑”이 요구하는 자료

- ② “을”은 위탁기간 종료일 및 제5조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이 연장될 경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손해배상) ① “을”的 책임 있는 사유로 제13조 제2항에서 승인한 기간 외에 연간 60일을 초과하여 동 시설을 운전하지 못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그 초과 일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은 “갑”이 지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 등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③ “을”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보증보험 증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주민복지향상 등) ① “을”은 “위탁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위탁시설물”을 관련기관·단체, 시민의 현장견학 장소로 개방하여 안내를 하는 등 대민통보서비스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시설보수, 물품·약품·소모품 구입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를 우선 발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타 협의사항) ① “갑”이 “위탁시설물”을 주민에게 출보하가 위하여 장소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시설물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을 인수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③ 본 협약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위·수탁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⑤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정 소송 등에 대한 분쟁은 “갑”的 소재지에 관할 법원에서 조정한다.

부 칙

1. 본 협약서는 “갑”과 “을”이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08년 월 일

“갑” 위탁자 : 제천시 제천시장 ⑩

“을” 수탁자 (주) 대표이사 ⑩